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2000. 4.19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0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3일

다. 상정일자 : 2000년 4월 19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제안이유

○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안제22조제2항)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안 제22조제3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안 제22조제4항)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 로 기간 확대 (안 제22조제7항)

○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으로 확대 (안 제22조제8항)

○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였으나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도 포함함 (안 제23조)

○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 (별표2)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동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10호)이 1999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 부 서 류

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 연가일수에서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한다.

제21조제6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생리기마다 1일"을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동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명예퇴직"을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으로 한다.

제23조 단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별 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第19조(연가일수에서의 산입) ①~③ (생 략)	第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③ (현행과 같음)
第21조(공가) (생 략) 1.~5. (생 략)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第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第21조(공가)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第20조 ·
第22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④~⑤ ⑥ 교육감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법 第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第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생 략)	第2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③ · · · · ·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 · ·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⑥ (현행 ④~⑤호와 같음) ⑦ · · · · · · · · · · · · · · · · · · · 재직기간 중에 · ⑧ · · · · · · · · · · · · · · · · · · ·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 ⑨ (현행 제⑧호와 같음)
第23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3조(휴가기간중의 휴가일수) ·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